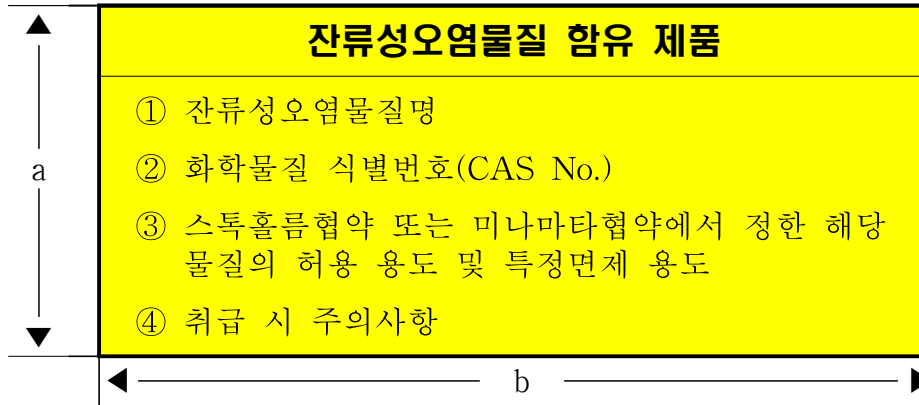


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9. 7. 2.>

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(제18조제4항 관련)

1. 용기·포장에 표시하는 경우

가. 양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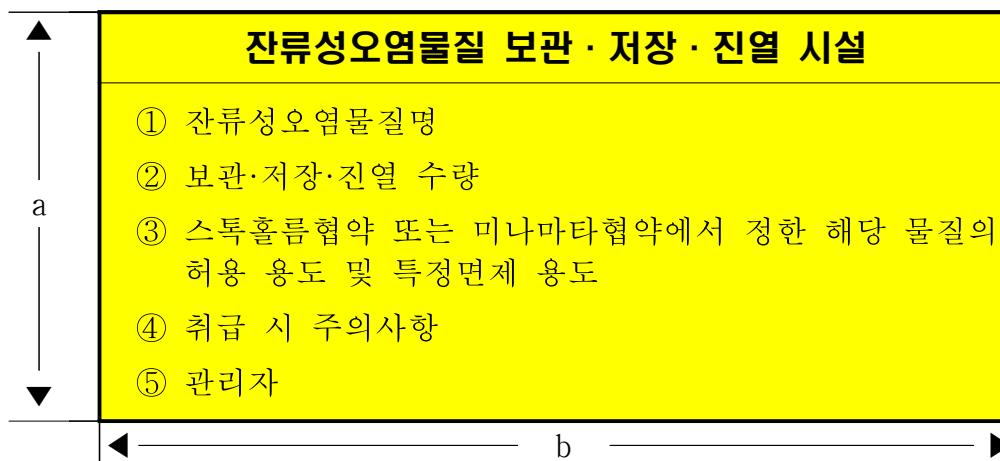
나. 크기:  $a : b \approx 3 : 4$

용기·포장의 용량	크기 ( $a \times b$ )
5 l 미만	용기·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% 이상
5 l 이상 50 l 미만	90cm <sup>2</sup> 이상
50 l 이상 200 l 미만	180cm <sup>2</sup> 이상
200 l 이상 500 l 미만	300cm <sup>2</sup> 이상
500 l 이상	450cm <sup>2</sup> 이상

다. 색상: 바탕은 황색, 글씨는 흑색

2. 보관·저장·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

가. 양식



나. 크기:  $a=40\text{cm}$  ,  $b=60\text{cm}$  이상

다. 색상: 바탕은 황색, 글씨는 흑색